

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

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10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21년 8월 24일

국세청장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101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첨부서류의 지정)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.

구 분	영 세 율 대 상	지 정 서 류	첨부서류규정
① 수출하는 재화 : 부가가치세법(이하 “법”이라 함) 제21조, 같은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함) 제31조	1. 무역업자와 대행계약에 의거 대행수출을 한 때	-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실적명세서	영 제101조 제1항제1호
	2.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관세환급금 등	-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 (별지 제1호 서식)	영 제101조 제1항제3호

구 분	영 세 율 대 상	지 정 서 류	첨부서류규정
②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: 법 제23조, 영 제32조	1. 선박에 의하여 화물 또는 여객운송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거나, 해외에서 받은 수입금액	-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(별지 제2호 서식)(외화입금증명서로 제출한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작성)	영 제101조 제1항제9호
	2. 항공기에 의하여 화물 또는 여객운송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거나, 해외에서 받은 수입금액	-공급가액확정명세서(별지 제3호 서식)	
	3. 다른 외항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선(탑승)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받는 대가	-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송장집계표 또는 대금청구서	
③ 그밖의 외화 획득 : 법 제24, 영 제33조	1.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	-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	영 제101조 제1항제10호
	2. 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	-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·용역일람표(별지 제4호 서식)와 -세관장이 발행하는 선(기)용품 등 적재허가서(선적이 확인된 것에 한함). 다만, 선(기)용품 등 적재허가서상에 물품 수량 및 금액 등이 합계로 기재되고 물품명세서는 별첨된 경우로서 사업자가 당해 물품명세서를 보관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물품명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	영 제101조 제1항제12호

구 분	영 세 율 대 상	지 정 서 류	첨부서류규정
③ 그밖의 외화 획득 : 법 제 24, 영 제33조	3. 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·용역일람표(별지 제4호 서식)와 - 세관장에게 제출한 수출입물품 적재·하선(기)작업 확인 신청 및 증명원 또는 대금청구서 	영 제101조 제1항제12호
	4. 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이외의 용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·용역일람표(별지 제4호 서식)와 -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(탑승)수리신고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나 대금청구서 	
	5.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·용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·용역일람표(별지 제4호 서식)와 -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수리신고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나 대금청구서 	
	6. 외국항행 선박·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·용역일람표(별지 제4호 서식)와 -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	
	7.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·용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화·용역공급기록표(별지 제5호 서식) 	

구 분	영 세 율 대 상	지 정 서 류	첨부서류규정
③ 그밖의 외화 획득 : 법 제 24, 영 제33조	8. 외교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·용역	-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 (별지 제6호 서식)	영 제101조 제1항제17호
	9.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위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	- 외화획득명세서(별지 제 7호 서식)와 -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 서류	
④ 재 화 · 용 역 공급이 2과세 기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	영세율대상이 되는 제조·가공·역무의 공급이 2과세기간 이상 소요되어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	- 제조·가공·역무제공계약서 사본	

제3조 【서식】 ① 제2조제1항제2호의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는 별지 제 1호 서식과 같다.

② 제2조제2항제1호의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.

③ 제2조제2항제2호의 공급가액확정명세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.

④ 제2조제3항제2호부터 6호까지의 외항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·용역 일람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.

⑤ 제2조제3항제7호의 재화·용역 공급기록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.

⑥ 제2조제3항제8호의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.

⑦ 제2조제3항제9호의 외화획득명세서는 별지 제7호 서식과 같다.

제4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 제431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

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.

부칙(2021. 8. 24. 국세청 고시 제2021-40호)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2021년 8월 24일 이후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종전 고시의 폐지) 종전의 「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」(2017. 12. 26. 국세청 고시 제2017-34호)는 폐지한다

외 화 획 득 명 세 서
(년 제 기)

1. 인적사항			
(1) 성 명		(2) 사업자등록번호	
(3) 상 호		(4) 사업장소재지	
(5) 거 래 기 간	년 월 일 ~ 월 일	(6) 작 성 일	
(7) 영세울적용근거		(9) 법 정 서 식 제출불능사유	
(8) 법정제출 서류명		(10) 법정서식제출 가능여부및일자	

2. 외화획득내용						
(11) 공급일자	공급받는자		공급내용			(17) 비 고 (외화 등)
	(12)상호및성명	(13) 국 적	(14) 구 분 (재화 또는 용역)	(15) 명 칭	(16) 금 액 (원화)	

위와같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하는 영세울 적용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였기 「영세울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울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」에 따라 외화획득명세서외 관계증빙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

- 붙 임 : 1.
2.
3.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제출인

세 무 서 장 귀하

작성 방법

- (1)~(4): 제출자(공급자)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.
 (5), (6): 제출대상기간과 이 명세서의 작성일을 적습니다.
 (7)~(17):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4조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한 영세울적용사업자가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영세울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. 금액은 원화로 적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, 외화 등은 비고란에 참고로 적을 수 있습니다.